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중 혐오 범죄 퇴치



COVID-19 위기에 맞서 싸우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팬데믹 기간 중, 아시아계 미국인 지역 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 및 괴롭힘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랄프 공민권법에 따라, 실제 또는 인지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혈통, 이민 신분, 시민권, 주요 사용 언어, 성적 성향, 성 정체성 및 장애를 이유로 한 위협 또는 폭력 행위는 법률에 위배됩니다(캘리포니아 민법 51.7). 캘리포니아 법은 구두 및 서면 위협, 신체적 폭행, 폭행 미수, 그라피티, 기물 파손 또는 재산 훼손을 금지합니다. 민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는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COVID-19 팬데믹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종, 피부색, 민족 등의 이유로 혐오 범죄, 괴롭힘, 위협 및 차별을 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시기에 어떠한 이유도 편견에 의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DFEH는 랄프 민권법 위반에 대한 집행 조치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용 가능한 시민 구제

1.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 금지 명령
2. 의료비, 임금 손실, 재산 수리 및 정서적 고통과 같은 실제(금전) 손해
3. 위반자 처벌을 위한 처벌적 손해 (금전) 배상금
4. 민사형 벌금 \$25,000
5. 수입료

혐오 범죄 예시

랄프 민권법에 따라 불법적인 행위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인종, 혈통 또는 출신 국가에 따른 외모를 이유로 폭력, 침 뱉기 또는 강제로 간섭하는 행위.
2. 사용 언어를 이유로 밀기, 차기, 또는 폭력적으로 위협하려는 행위.
3. 이민자 또는 다른 국가 출신의 개인(또는 그렇게 인지되는 개인)에게 속해있다는 이유로 사업체, 가정 또는 기타 재산을 파손하는 행위.
4. 성적 성향, 성 정체성 또는 기타 보호되는 특성(인종, 피부색 민족 등)을 이유로 한 폭력을 옹호하는 행위.

또한 캘리포니아 법은 고용주, 주택 제공 업체 및 사업장에서 인종, 피부색, 민족 등의 이유로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금지합니다(캘리포니아 정부법 12900~12996 및 운루 민권법).

혐오 범죄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면 불만 사항을 제기해주시요. DFEH 불만 사항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알게 된 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은 필요하지 않으며 DFEH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합당한 편이가 필요한 장애가 있는 경우, DFEH는 청각 장애 또는 난청이 있거나 언어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전화 또는 캘리포니아 중계 서비스(711)를 통해 접수 내용을 문자로 전환하여 도움을 드립니다. 또는 아래 연락처로도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 제기처

공정 고용 주택국

dfeh.ca.gov

수신자 부담: 800.884.1684

TTY: 800.700.2320